

하반기 판례변경에 따른 2021년 테마 형법(판례·기출증보판) 정오표

〈각론 I 권〉

p.85(2020년 테마 형법 p.75)

문제 3번 해설 ② 및 정답 교체

② × :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 ×(대판 2014.9.4, 2014도8423 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 × ⇨ 위계 ×)

⇨ ② ○ : 대판 2020.8.27, 2015도9436 전원합의체(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, 착각,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,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.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. 피해자가 오인, 착각,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,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·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.)

정답 ② ⇨ 정답 없음

p.88(2020년 테마 형법 p.78)

문제 9번 해설 ④ 및 정답 교체

④ × : 미성년자위계간음죄 ×(대판 2001.12.24, 2001도5074 ∴ 금품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 × ⇨ 위계 ×)

⇨ ④ ○ : 대판 2020.8.27, 2015도9436 전원합의체(∴ 피해자가 오인, 착각,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,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·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.)

정답 ④ ⇨ 정답 없음

p.90(2020년 테마 형법 p.80)

문제 11번 해설 ④ 및 정답 교체

④ × :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위계 ×(대판 2002.7.12, 2002도2029)

⇨ ① ○ : 대판 2020.8.27, 2015도9436 전원합의체(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, 착각,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,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.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. 피해자가 오인, 착각,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,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·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.)

정답 ③ ⇨ 정답 ③④

p.93(2020년 테마 형법 p.83)

문제 17번 해설 ③ 및 정답 교체

③ 대판 2002.7.12, 2002도2029

⇨ ③ × : ~ 위계에 해당한다(대판 2020.8.27, 2015도9436 전원합의체).

정답 ④ ⇨ 정답 ③④

p.97(2020년 테마 형법 p.83<추록>)

문제 22번 해설 ① 및 정답 교체

① × : 위계 ×(대판 2001.12.24, 2001도5074 ∴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에 관하여 금품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 ×)

⇒ ① ○ : 대판 2020.8.27, 2015도9436 전원합의체

정답 ③ ⇒ 정답 ①③

〈각론 II 권〉

p.13(2020년 테마 형법 p.15<관련판례 5번>)

관련판례 4번 뒷부분 교체

4. 공장저당권설정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와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⇒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한 경우 ⇒ 배임죄 ×(대판 2020.10.22,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∴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 의무이다.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'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'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행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)